


대 통 령 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18년 5월 31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
장 김 부 겸

●대통령령 제28929호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임용권(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)”을 “임용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임용권(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)”을 “임용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본다”를 “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임용시기의 특례)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.

1.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
 - 가. 재직 중 사망한 경우: 사망일의 전날
 - 나. 퇴직 후 사망한 경우: 퇴직일의 전날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4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: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
3.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: 사망일의 전날

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

제49조제3항제3호 중 “7일”을 “3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,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른 직렬의 시험과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법무부령 제929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5월 31일

법무부장관 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감찰관”을 “감찰관, 법무심의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·개선 등의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무심의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. <법무부 제공>